

UR덤핑방지협정의 주요내용과 주요 국가의 덤픽방지제도 개편방향 (II)

8) 누적적 피해평가

가. 협정문

산업피해조사에 있어서 개별국가들로부터 덤픽수입으로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적하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문은 누적적 피해평가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픽수입을 누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 덤픽마진이 미소마진(2%)이상이며, (b)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개별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수입국의 전체수입량의 3% 미만이고 3% 미만의 국가들의 수입량 합계가 수입량 전체의 7% 이하에 해당할 경우)이 아니고, (c) 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입물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관계를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아울러 누적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는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덤픽

평방지관세의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미국의 경우

신법은 협정문을 반영하여 협정문상의 누적평가의 요건을 수용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구법하에서는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대상이 되어 있으면 누적평가를 행할 수 있었으나 신법은 같은 날에 제소된 것에 대하여만 누적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피해소자의 입장에서 누적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최종판정을 위한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신법하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신법은 어떤 국가에 대하여 제소를 한 후 다른 국가에 대하여 누적평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소자에게 기존의 제소를 취하하고 다시 한꺼번에 모아 제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제소된 반덤핑 절차에서는 취하된 절차에서의 기록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소자의 제소 취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신청의 취하와 재신청은 취하후 3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1번으로 제한된다.

한편 구법하에서는 상계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물품수입과 덤픽방지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물품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누적평가(Cross-Cumulation)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법하에서도 이러한 교차누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협정문 위배의 소지가 있다.

다. EU의 경우

구법하에서 누적적 피해평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EU산업에 대한 피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수출자 각자가 초래한 부분을 개별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근거로 대부분의 경우 누적적 평가를 행하여 왔다.

신법은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누적평가에 대한 조

창을 신설하였다.

9) 제소적격(Standing)

가. 협정문

반덤핑 제소절차는 해당 국내 산업을 덤프수입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부과요건인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또한 국내 산업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않는 일부 국내업체에 의하여 반덤핑 절차가 이용되는 것은 반덤핑 제소절차가 본래 의도하는 바가 아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국내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조사절차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덤핑 제소 신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것이 반덤핑 제소절차에서의 제소적격(Standing)이다.

제소적격인 UR협상에서 문제된 것은 미국의 경우 국내 생산자의 적극적인 반대표시가 없는 이상 이를 지지로 간주하여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등 제소적격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GATT 패널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협정문은 제소적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조사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이 때 국내산업의 대표성은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들의 신청지지도를 조사하여 생산량 규모로 반응자의 50%가 넘는 생산자의 찬성을 얻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생산자가 동종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25% 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요약하면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응답자의 50% 이상의 찬성요건과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정문은 조사당국이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지지도를 조사하여 제소적격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산자의 수가 많을 경우는 통계적으로 적정한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반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미국의 경우

구법은 국내산업 생산자들의 과반수의 적극적인 반대표시가 없으면 이를 지지로 간주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였으나 신법은 협정문의 규정을 반영하여 응답자의 50% 찬성요건 및 국내총생산의 25% 지지요건을 명문화하였다.

신법은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소적격과 관련된 법규정을 정비하였다.

먼저 신법은 구법과 달리 국내 산업의 대표성문제는 조사개시 시점에 최종적으로 완결지어지는 것으로 하여 조사개시 후 제소적격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피제소자가 상무성의 제소적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다투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절차적으로는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국내총생

산의 50% 이상의 지지를 입증하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증이 행하여지지 못하였으면 지지도를 조사하게 된다.

이 경우는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본추출의 방법은 신청서상의 정보 또는 국내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조사개시는 제소후 2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지도 조사 목적상 조사개시 기간이 20일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제도상은 제소후 조사개시 단계까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표명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지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의견표명의 기회가 부여된다.

다. EU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역내 생산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자로만 정의하고 집행위의 관행상 그 최저수준을 총생산량의 25%로 보아 왔다.

신법은 협정문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지도조사의 반응자의 50% 이상의 찬성 및 총생산자의 25% 이상의 지지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10) 표본추출 조사

가. 협정문

덤프마진의 산출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자의 수가 많은 경우 전원에 대한 개별적 조사는 조사당국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므로 그러한 원칙의 적용이

고려하여 진다.

협정문은 위와 같은 경우 표본 추출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당국 가로부터 수출량이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사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조사의 적절한 시한내의 완결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협정문 9.4에서 조사된 기업들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에 의하도록 하고 가중평균의 계산에는 De Minimis 마진, 0의 마진, 획득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한 덤핑마진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나. 미국의 경우

미상무성은 대체로 협정문과 같은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명문화하는데 불과하였다.

다만, 미조사기업에 대하여는 “All Others”라고 하여 평균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평균율 산정에 있어서는 De Minimis 마진 및 0의 마진은 제외하되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 BIA)에 의하여 산출된 덤핑마진은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그런데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신법하에서는 BIA에 의하여 산출된 덤핑마진도 제외되게 되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덤핑마진이

모두 De Minimis 덤핑마진, 0의 덤핑마진 혹은 BIA에 의하여 산출된 덤핑마진일 경우에 대하여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예컨대, De Minimis 마진, 0의 마진, BIA에 의한 마진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문은 여기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EU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생산자 등의 다수로 인한 표본추출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신법은 협정문의 규정을 반영, 신설하였다.

표본추출은 궁극적으로 집행위가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표본추출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조사기업에 대하여도 협정문과 같이 조사기업의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1) 무시할만한 수입량 및 미소마진

가. 협정문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덤핑마진 자체가 미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덤핑방지 관세제도의 남용으로 이어져 수출자에게 부당한 제재가 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UR협상 과정에서는 그 수량화에 촛점을 모아졌다.

협정문은 덤핑마진이 미소(De Minimis)하거나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준인 경우 조사 종결 사유로 규정하고 덤

핑마진의 미소기준에 대하여 2%로,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에 대한 기준으로는 수입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의 3%미만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과 관련하여서는 3%미만의 수출국들이 다수 있을 경우 이들의 물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7%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무시 할만한 수준이 된다.

나. 미국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미소마진 기준을 0.5%로 하고 있었으나 신법은 협정문을 반영하여 2%로 상향 규정하였다. 구법하에서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면 바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신법하에서도 같다.

한편 무시할만한 수입량에 대하여는 법상 물량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관행상 2% 미만으로는 보아 왔으나 협정문을 반영하여 신법에서는 3% 기준을 명시하였다.

구법하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입량인 경우 누적평가에서 제외되었지만 바로 조사 종결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법하에서는 ITC가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판정하면 바로 별도의 판정없이 조사가 종결되게 된다. ITC는 예비조사에서 수입물량이 무시할 만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비조사에서 긍정적인 결정이 있더라도 만약 동종물품의 지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다르게 주장되는 품목지정 방법에

의 할 때 무시할 만한 수량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입물량이 수량 기준에 아주 근접하여 최종 판정 시에 수량기준을 초과할 합리적인 정후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는 종결되지 않게 된다.

협정문상은 무시할 만한 수량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데 신법은 제소 이전의 가장 최근의 1년 동안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 EU의 경우

구법 하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집행위 덤핑마진의 경우 통상 1%, 그리고 수입량은 역내 시장 점유율 1.8% 미만인 경우에 미소한 것으로 보고 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왔다.

신법은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De Minmins 덤핑마진율 2%, 그리고 무시할 만한 수입량을 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닌 수입량의 3%(개별국 기준) 및 7%(합계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며 덤핑마진 및 수입량이 미소한 경우 조사 종결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조사는 종결하나 그 후 재심시 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다.

12) 신규 수출자의 재심

가. 협정문

협정문 9.5는 어떤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그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

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신규 수출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한 신속한 재심절차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신규 수출자에 대하여 재심 개시일로부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나. 미국의 경우

구법 하에서는 신규 수출자라고 하더라도 미조사 기업과 마찬가지로 "All Others"에 포함시켜 정기적 재심(연례재심)까지 기존 수출자의 평균율을 추정 덤핑방지 관세로 부과하여 왔다.

그 이유는 반덤핑 대상 수출자가 신규 수출자를 통하여 반덤핑 명령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였다.

그러나 신법은 협정문에 부합하도록 신규수출업자에 대하여 기존 수출자의 평균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속한 재심을 통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심은 신규 수출자가 조사대상 기간 중에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다는 점 및 기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미조사기업 포함)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만 개시되는데 그 입증방법은 신규 수출자가 자신들의 관계회사 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미국에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게 된다.

신규 수출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신속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상무성은 업무편의 상 반덤핑 명령야이 발하여진 달의 6개월째 되는 달의 말 또는 1년째 되는 달의 말 중 가까운 날에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EU의 경우

구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고 1989년이래 관행상 신규 수출자 조사를 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부과를 중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관세는 당해 국가에 대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후 환급절차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신법은 협정문을 수용하여 신규 수출자 재심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신규 수출자가 기존 반덤핑 조치 대상인 수출자 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존 관세는 무효화되고 재심은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나 수입물량은 추후의 소급 관세부과를 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3) 반덤핑 관세의 환급

가. 협정문

협정문은 반덤핑 관세의 환급에 대하여 미국과 같이 반덤핑 관세가 소급적 기초에서 부과되는 경우와 EU와 같이 전망적 기초에서 부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반덤핑 관세가 소급적 기초에서 부과되는 경우, 즉 조사절차가 완료되면 향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결과 밝혀진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추정 덤핑방지 관세액을 예치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세평가는 실제 그 기간동

안의 덤핑마진을 다시 조사하여 확정하게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 관세의 최종 평가는 요청일로부터 통상 12개월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18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환급은 이러한 최종 평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덤핑방지 관세가 전망적 기초에서 부과되는 경우, 즉 조사절차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에 의한 관세 환급 요청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환급결정이 있게 되면 그로부터 90일이내에 현실적인 환급절차가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성 수출가격으로 수출가격을 산정할 경우 적정 환급액 및 환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이 인상되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환급절차에서는 수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기지불된 덤핑방지 관세를 수출가격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나. 미국의 경우

소급적 기초에 의하여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관세의 환급이라고 할 때는

재심을 통하여 확정된 관세 평가액과 관세 평가의 유보를 통하여 현금으로 예치된 추정 덤핑방지 관세의 차액의 환급을 말하게 된다.

구법에서는 이러한 재심의 절차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신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5일로 하고 연장되는 경우 최장 545일내로 함으로써 협정문에 일치시켰으며 관세 청산은 세관에 대한 관세 청산 지시후 90일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90일 시한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절차의 정확성을 위하여 늦추어 질 수 있다.

아울러 구성 수출가격의 경우 구법하에서도 수출자가 관세를 대납하거나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만 수출가격으로부터 덤핑방지 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법하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 EU의 경우

전망적 기초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통하여 납부된 관세가 실제 덤핑마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급 시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관련 수입자의 경우 납부된 덤핑방지 관세는 비용으로 공제되어(Duty as a Cost) 관세액 만큼의 재판매가격 인상이 있어도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신법에서는 협정문을 반영하여 환급요청은 관세부과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고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한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Duty as a Cost에 관하여는 「관세가 재판매가격 및 그 후속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비용으로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협정문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14) Sunset 재심

가. 협정문

협정문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기간을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행정적 재심에서 덤핑과 피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다시 5년동안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자동 실효조항(Sunset Clause)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덤핑방지 관세부과의 종결일 이전에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혹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재심 즉 이른바 Sunset 재심에서 관세부과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면 덤핑방지 관세는 다시 5년간 지속될 수 있다.

나. 미국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덤핑방지 관세의 자동 실효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덤핑 명령이 발하여지면 재심을 통하여 반덤핑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반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는 지속되었으나, 협정

문의 규정으로 미국법에서도 자동 실효 조항이 도입되게 되고 아울러 자동 실효를 저지하기 위한 재심 절차도 새로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절차적으로는 반덤핑 명령 후 5년이내에 덤픽 및 피해의 재발 여부에 관해 판정하도록 하고 상무성이 재심 개시를 연방판보가 공고하고 국내 이해 관계인의 응답이 없으면 재심 개시 후 90일이내에 반덤핑 명령의 취소(정지된 절차의 종결, 가격약속의 종결)가 이루어진다.

국내 이해 관계인의 응답이 있으나 그것이 부적절한 것이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재심을 하고 상무성은 120일이내에 ITC는 150일이내에 최종판정을 행하게 된다.

만약 적절한 응답이 있으면 완전한 재심을 행하게 되는데 이경우 절차시한은 상무성은 개시이후 240일이내에 ITC는 360일이내에 완결하게 되고 대상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90일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ITC는 상무성과 협의하여 동일한 동종물품, 관련된 동종물품 또는 동일한 혹은 관련 생산자를 묶어서 통합 재심(Grouped Five-Year Reviews)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400여개의 반덤핑 명령이 미국의 WTO가입시 새로 발령된 것으로 취급되게 되어 이들에 대한 Sunset 재심에 대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WTO가입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전에 모두

재심을 개시할 것이고 재심 개시 후 18개월이내에 재심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행정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무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심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오래된 순서로 진행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Grouping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순서를 벗어날 수도 있다.

한편 신법은 재심의 기준에 대하여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본 조사 절차에서 와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재심은 미래에 대한 추정 또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므로 예상 결과가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 바, 그렇다고 하여 사실 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정인 이사 덤픽 또는 피해의 재발 또는 지속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덤픽 가능성 및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 가능성(Likelihood of Injury)

ITC는 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된 조사의 종결과 그것이 가지는 제한적 효과의 제거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가능한 영향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조사에서 피해 판정이 실질적 피해, 피해 우려,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 중 어디에 근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 가능성에 관한 판단 요소들로는 우선 (a) 이전에 행하여진 피해 판정들(반덤핑 명령 발령 이전의 수입물량, 가격효과, 국내산

업에 대한 영향), (b) 반덤핑 관세의 부과로 인한 국내산업의 개선상황 (c) 반덤핑 명령이 취소될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에 취약한지 (Vulnerable)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a)의 요소는 반덤핑 명령의 발령이전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이 경쟁하고 있었던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b)의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 상황이 반덤핑 명령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면 반덤핑 명령이 취소될 경우 국내산업이 다시 악화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c)의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면 덤픽수입 이외의 다른 원인들이 미래의 덤픽 수입과 함께 미래의 피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의 재발 또는 지속에 대하여 긍정 판정을 행할 수 있게 만든다.

한편 수입자와 수출자가 관계인 경우 수입자에 의하여 관세흡수(Duty Absorption)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덤픽마진을 제거하는 대신 수입자가 관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흡수하고 계속하여 덤픽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법은 반덤핑 명령후 2년 또는 4년째에 개시되는 행정 재심 동안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관세흡수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관세흡수가 인정되면 이것은 피해의 재발 또는 지속을 긍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 요소들 이외에 일반적인 피해 분석에 사용되는 요소들, 예상되는 수입물량, 예상되는 가격효과, 예상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덤핑마진의 규모도 고려가 될 것인데 이는 상무성이 ITC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심에서도 누적 평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본조사 절차에서 누적이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재심에서 누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덤핑 가능성(Likelihood of Dumping)

상무성은 반덤핑 명령의 전후를 비교하면서 덤핑마진과 수입물량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반덤핑 명령이 취소될 경우의 덤핑의 유지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판정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수입물량이 감소되면서 반덤핑 명령 후 덤핑마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덤핑 가능성의 중요한 정후가 될 것이고 반면 덤핑마진이 감소하면서 수입물량이 지속 혹은 증가된다면 외국 수출자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지속하기 위하여 더 이상 덤핑을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반덤핑 명령 후 덤핑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덤핑 명령이 취소될 경우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반덤핑의 규제 속에서도 덤핑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러한 규제가 없어졌을 때에 덤핑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명령 후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덤픽없이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덤핑 명령이 취소되면 미국시장에 다시 들어와 덤픽을 하게 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덤픽이 없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덤픽의 재발 또는 지속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은 수출자가 반덤핑 명령 때문에 덤픽을 중단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무성은 덤픽 가능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격, 비용, 시장 및 경제적 요소들은 고려하게 될 것이다.

다. EU의 경우

EU는 종래부터 반덤핑 조치의 자동 실효(Sunset)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Sunset Review제도 역시 규정되어 있었다. 신법에서는 이를 Expiry Review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당사자들이 권리를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법상 특정 반덤핑 조치의 자동 실효 임박 공고는 동 조치의 마지막 해에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역내 생산자는 늦어도 5년 기간의 3개월 이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출자, 수입자, 수출국 대표 및 역내 생산자는 그러한 재심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이를 보강하는 주장을 하거나, 반박하거나 달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결론은 당해 조치를 제거하는 경우 덤픽과 피해가 다시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제반 증

거들을 고려하여 내려지게 된다. 다만, 협정문은 이러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를 들고 있으나 신법은 역내 생산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재심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15)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조항

가. 협정문

우회방지조항은 협상의 대상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문안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를 덤픽 방지조치 위원회(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각료회의 결정 및 선언만이 있었다.

나. 미국의 경우

미국은 1988년 종합부역법에서 우회방지 조항을 마련하였다.

즉, (a)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반덤핑 명령의 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고 (b)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위 물품의 적용대상인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구성품을 미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한 것이고 (c)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치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 또는 구성품의 가치간의 차이가 적을 경우 행정 당국은 별도의 조사 절차없이 수입 부품 또는 구성품을 당해 반덤핑 관세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립 또는 완성이 제3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조반덤핑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우회 방지 조항은 대부

분의 부품을 미국(또는 제3국)으로 들여와 사소한 조립 또는 완성 단계를 거친 후 완제품의 형태로 미국에 판매할 경우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회 방지 조사의 결과 사소한 조립 또는 완성이 미국에서 일어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수입부품의 가치와 완제품의 가치의 차이가 작지 않을 경우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부품만을 자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가치와 완제품의 가치 차이가 크게 되어 우회 방지 조항의 적용이 실패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회 방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미국에서 사소한 조립 또는 완성이 행하여지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제품의 가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으로부터는 중요한 몇가지 부품만을 수입하고 나머지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하는 경우도 우회 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법은 미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이 어떠한 경우에 사소한 것인지에 대하여 수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 EU의 경우

구법하에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그리고 EU내 역내조

립의 경우에는 반덤핑 규정 13.10 (Parts Amendment)을 적용하여 왔다.

Parts Amendment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a) EU내 생산자가 반덤핑 관세의 적용을 받는 동종물품의 수출자와 관련 또는 제휴관계에 있고 (b) 조사절차의 개시후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 전체 원재료(또는 부품)중 60% 이상이 반덤핑 대상국으로부터 조달되었을 경우이었다.

그런데 위 부품규정은 일본에 의하여 GATT폐널에 제소되어 1990년 5월 GATT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되었고 EU는 우회 방지 조치에 대한 Ur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신법은 협정문을 수용하면서 위 부품규정을 제3국내 조립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a) 당해 조립공정이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또는 그 직전에 개시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증가하였고 당해 부품이 반덤핑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b) 그러한 부품이 조립물품에 소요된 총 부품가격의 60% 이상에 해당되고(다만, 조립공정 시 발생한 부가가치가 생산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회로 인정되지는 않음) (c) 그와 같이 조립된 물품의 수량 및 가격으로 인하여 반덤핑 조치의 피해구제 효과가 손상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회 조사 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개시후 9개월이내에 종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

이하의 사항들은 협정문의 챕터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개정 내용은 아니나 이번 개정 입법시에 새로이 규정되게 된 것으로 특기할 만한 것들이다.

가. 미국의 경우

Captive Production은 미국의 상업적시장(Merchant Market)에서 는 팔려지지 않고 같은 생산자에 의하여 하향성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을 말하는데 국내산업을 파악하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문제되어 왔다.

미국의 신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신법은 먼저 상업적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 동종물품과 내부적으로 하향성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전되는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물량이 상당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여기서 상당하다는 것은 수입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경쟁적 영향력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품의 시장침투율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한 규모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 (a) 하향성 물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이 국내 동종물품의 상업적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b) 국내 동종물품이 별도의 하향성 물품의 생산에 주요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c) 상업적 시장에서 판매된 국내 동종물품이 그 하향성 물품의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

물품의 시장 침투율 등을 상업적 시장에 한정하여 계산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입물품이 비관계인에 의하여 수입 판매되면 그 물량 전체와 국내 동종물품의 상업적 시장 판매분을 비교하여 상업적 시장에서의 시장침투율 등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 수입물품도 관계인에 의하여 수입되어 일부는 상업적 시장, 일부는 내부적으로 하향성물품의 생산에 투입된다면, 상업적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당연히 상업적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시장침투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수입물품은 그것이 국내 동종물품

과 경쟁적 위치에 있을 때에만 상업적 시장에서의 시장침투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나. EU의 경우(반덤핑조치의 종지)

신법에서는 반덤핑조치의 부과가 EU내 시장여건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해지는 경우 집행위가 반덤핑 조치를 1년 범위내에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단 EU산업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는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지기간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수입물량의 등록 : 관세평가의 유보)

신법은 조사대상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량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수입량 등록제도는 역내산업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고 9개월간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잠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반복적 대량 덤팡의 경우 또는 신규수출자에 대한 소급적 관세부과, 우회 방지 조치 등의 경우에 사용되게 된다.

용어해설

CDMA 1(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전화용어

코드분할다중접속은 스펙트럼 확산의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스펙트럼 확산다중접속(SSMA) 방식이라고 한다. 동일주파수대역폭을 여러 지구국이 동시에 이용한 방식으로 특정한 PN(Pseudo Noise의 사잡음)

Code에 의해 각지국국의 전송전보가 분리되는 전송방식이다. CDMA는 같은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FDMA나 TDMA에 비하여 훨씬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대역을 갖는 간섭이나 Jamming 등에 강하다. 또한 원하지 않는 상대수신국에 대한 수신 확률(LPI : Low Probability of

Intercept)이 매우 낮다. 서로 약속된 PN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수신 지구국에서는 정보를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CDMA는 지구국의 수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심한 시스템 성능저하를 받게 되는 반면 시스템의 사용수가 너무 적을 경우 트랜스폰더의 주파수 이용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CDMA 기술은 여러가지 Spread Spectrum 기술 중 다음의 두 가지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DS-CDMA(Direct Sequence CDMA)
2. FH-CDMA(Frequency Hopping CDMA).